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서비스집중형

2022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서비스집중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2-공공기관평가실-311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우편번호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성안동

안전은 권리입니다

2022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서비스집중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은 권리입니다

2022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서비스집중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CONTENT

Ⅰ 평가 목적 및 개요 01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05

Ⅲ 지표 체계 17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29

Ⓐ 안전보건경영체제 29

Ⓑ 안전보건관리 37

Ⓒ 안전보건활동 45

Ⓒ-1 직영 및 도급 사업장 45

Ⓒ-2 건설발주 사업장 51

Ⓓ 안전보건성과 61

I

평가 목적 및 개요

Ⅰ. 평가 목적 및 개요

1 평가 목적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향상 유도**

□ 안전보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에도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

2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호)

○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 평가 의의

○ 공공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활동** 및 **그 수준**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 사업장 : 본사, 사업소, 지사, 도급.건설발주 현장 등

○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활동 노력·**수준**을 **경영평가**에 **반영**(기획재정부)

□ 평가 내용

○ 공공기관의 유형·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본사) 및 **현장작동성 평가**(사업장)**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

○ 평가 내용은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지표로 구성

□ 평가 수행 체계

○ **(주관)** 고용노동부 - **(수행)** 안전보건공단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Ⅱ. 평가 대상 및 방법

1 평가 대상

□ 평가 대상기관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중소형	
171개소	36개소	12개소	44개소	37개소	42개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29개소)

구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36개)	SOC (12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 (1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진흥·서비스 (12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93개)	기금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4개)	SOC·안전 (13개)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진흥 (16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복리증진 (1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구분			공공기관명
	중소형 (37개)	중형 (13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형 (24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42개소)

구분	공공기관명
연구기관 등 (42개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대상 확정(기획재정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 대상 선정 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고시에 따른 평가계획(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주관부처(기획재정부) 요구사항(기타공공기관)

2 지표 적용 유형

□ 평가 유형

구분	기간산업형	서비스집중형		
		그룹 I	그룹II	연구기관 등
171개소	28개소	49개소	52개소	42개소

□ 유형 분류

○ 공공기관의 사업 **특성·위험도를 고려**하여 **기간산업형**과 **서비스집중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적용

- **(기간산업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의 사업과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기관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②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③ 석유·전기·가스·난방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의 생산·공급

  ④ 기타 정부부처에서 요청하는 공공기관 등

- **(서비스집중형)** 기간산업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술·행정서비스 중심의 기관 또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제도 대상기관 (그룹 I, 그룹 II, 연구기관 등으로 세분화)

구 분	분류 기준
그룹 I	①고위험 기관* ②근로자 1,000인 이상 ③기획재정부 안전관리중점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그룹 II	기간산업형 또는 그룹 I, 연구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연구기관 등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제도 대상인 기타 공공기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보유 현황 ▲작업환경 측정 시료 건수 ▲특수건강진단 수진 건수 ▲알리오 입찰공고 계약 건수 ▲알리오 입찰공고 도급·발주공사 계약 건수 ▲전년도 재해자 수 ▲일선기관 수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시설물 현황 등을 토대로 고위험 여부 구분

□ 유형별 기관현황

구 분		공공기관명
기간산업형 (28개)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서비스 집중형 (143개)	그룹Ⅰ (49개)	강원랜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환경공단
	그룹Ⅱ (52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등 (42개)	광주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3 평가체계 및 시기

□ 평가 체계

○ 수준평가는 **종합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로 구분 실시

- **(종합평가)**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기관 본연의 사업과 도급·건설발주 등이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장** 또는 **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수준**을 평가

□ 평가 절차

○ 당해 연도에 **현장작동성평가** 후 익년도에 **종합평가** 실시

❶ 현장작동성평가 ⇒ ❷ 종합평가 ⇒ ❸ 최종 평가결과 확정

기관 현황 기초조사 공단→ 평가대상기관	평가 계획 수립 (실무위원회) 공단→ 노동부	평가계획 공지 노동부→ 평가대상 기관	평가계획 설명회 노동부/공단→ 평가대상 기관	현장작동성 평가 실시 노동부/공단→ 평가기관	종합평가 실시 노동부/공단→ 평가기관
중간결과 공지 (이의신청) 공단→ 평가대상 기관	실무 위원회 공단,노동부	평가심의 위원회 노동부	평가결과 통보 노동부→ 평가대상 기관	평가결과 송부 노동부→ 기재부	정부 경평 활용 기재부

○ 평가 세부절차

- **(종합평가)** 기관별 평가일자 공지(12월) 후 평가 실시
- **(현장작동성평가)** 기관별 평가 시행 월 공지(설명회 이후) → 기관별 평가대상 사업장(장소) 공지* → 현장작동성평가 실시

* 평가 시행 월은 평가 전월, 구체적인 평가 장소는 평가 2일 전에 개별 통지

□ 평가 시기

○ **(종합평가)** ’23년 1월 ~ 2월 (본사별 2일)

- 평가 대상 :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전체 공공기관

※ 평가시기 및 대상은 별도 계획, 관련 부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작동성평가)** ‘22년 8월 ~ 11월 (현장별 2일)

- 평가 대상 :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전체 공공기관

구분	직영 및 도급			건설발주[3]
	0개[1]	1개~4개	5개 이상[2]	
대상	본사1	직영·도급사업장1, 본사1	직영·도급사업장2	건설발주1~2
시기	’23년 1월 ~ 2월	’22년 8월 ~ 11월(직영) ’23년 1월 ~ 2월(본사)	’22년 8월 ~ 11월	’22년 8월 ~ 11월

1) 직영 또는 도급사업장(직영사업소)이 없더라도 관리범위가 넓은 공항·항만·위락시설 보유기관은 일정 지역에 대해 현장작동성평가 실시

2) 현장작동성 평가를 2개소에 대해 받은 기관은 현장작동성평가에서 모두 확인된 지표는 제외하고 본사 종합평가 진행

3) 건설발주 사업장은 1개소에 대해 현장작동성 평가를 실시하되,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2개소 실시

※ 「연구기관 등」그룹은 본사에 대해서만 현장작동성평가 1개소 실시하되, 최근 3년 이내 직영 또는 도급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직영·도급사업장 현장작동성평가 1개소 실시

- 현장작동성평가 선정

■ **직영 및 도급 사업장(110개 기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자체청사 및 시설(교육장, 수련원, 대국민 이용시설 등)의 보유 여부

②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보유 여부

③ 유해·위험 도급사업 보유 여부

④ 유해·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 수

⑤ 유해인자 보유 여부

구 분		공공기관명
기간산업형 (28개)		**(직영·도급사업장 2개소 평가 / 21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직영·도급사업장 1개소 평가 / 7개 기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서비스 집중형 (82개)	그룹Ⅰ (47개)	**(직영·도급사업장 2개소 평가 / 41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직영·도급사업장 1개소 평가 / 6개 기관) 강원랜드(주),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룹Ⅱ (34개)	**(직영·도급사업장 2개소 평가 / 14개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영·도급사업장 1개소 평가 / 20개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구기관등 (1개)	**(직영·도급사업장 1개소 평가)** 국방과학연구소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이 직영사업소 1개소인 기관과 위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종합평가 시기에 본사 현장작동성평가 별도 실시

■ **건설 발주 사업장(49개 기관, 57개 현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 냉동·냉장창고, PC 및 철골,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2m 이상 굴착, 비계 설치·해체, 용접 및 밀폐공간 작업 등 사망사고 다발작업 보유

② 타워크레인(이동식 포함), 항타·항발기, 리프트 등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 보유

③ 굴삭기 및 트럭 등 중장비 작업 보유

④ 기타 과거 사고사망 발생 현장 또는 시공사 등

구 분		공공기관명
기간산업형 (20개)		**(건설발주현장 2개소 평가 / 7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발주현장 1개소 평가 / 13개 기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비스 집중형 (29개)	그룹Ⅰ (13개)	**(건설발주현장 2개소 평가 / 1개 기관)** 한국환경공단
		(건설발주현장 1개소 평가 / 12개 기관) 강원랜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그룹Ⅱ (4개)	**(건설발주현장 1개소 평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연구기관등 (12개)	**(건설발주현장 1개소 평가)** 국방과학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 평가반 구성

○ 기관 유형, 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5명의 안전전문가로 구성

- **(현장작동성평가)** 안전보건공단 3명 이내*

  * 기간산업형 3명/반, 서비스집중형 및 건설발주 사업장 2명/반 운영

- **(종합평가)** 고용노동부 1명, 외부전문가 1명, 안전보건공단 3명으로 탄력적 운영

○ 평가반 구성은 관계 부처 요구, 평가환경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결과 심의 등

□ 실무위원회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적용하는 지표유형
- 세부 평가계획 및 평가지표, 평가반 구성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 평가결과 산출방법
- 기타 평가 실시과정 중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 등

실무위원회 구성

구성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 (위촉직) 안전보건 역량이 인정되는 전문가 등

□ 평가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

○ 심의·의결 기구로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결과(평가등급, 점수 등) 결정**

○ 그 밖에 평가와 관련된 사항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구성	◇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당연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 안전보건공단 평가담당부서장 - (위촉직) 노동계·경영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5 평가결과 제공

□ 경영평가단 제공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 인용되며, 심사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반영

□ 개별기관 송부

○ 안전경영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해당 기관별 개별 결과서 송부

○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서**와 함께 **절대등급, 정부 경영평가 유형별 상대등급, 평가분야 및 지표별 등급**을 통보

6 기관 협조사항

○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 평가장소 및 증빙자료 등 사전 준비

○ 경영진 및 근로자 등 면담 지원, 현장작동성평가 시 현장 안내

○ 평가관련 증빙자료는 전산파일(hwp, pdf 등), 내부전산망(ERP, EHS 시스템 등)을 이용한 on-line 형태, 종이문서 출력 및 제본 등 기관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

※ 현장작동성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대상 지사·사업소 등에서 확인

※ 평가기간 중 제공한 증빙자료는 필요 시 이의제기 전까지 평가위원이 보관

○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기획재정부에서 평가 모니터링 실시

Ⅲ

지표 체계

1 지표 개요

□ 지표 구성

○ 공공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안전보건경영체제」,「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활동」,「안전보건성과」4개 분야로 구성

- **(안전보건경영체제)**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보건경영방침상 목표 실행을 위한 조직의 안전역량·예산 및 규정 등의 기틀 마련 수준을 평가

-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경영방침과 규정 등을 바탕으로 직영·수급업체 등의 운영계획 및 관리활동, 참여도 등을 평가

- **(안전보건활동)**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을 평가

- **(안전보건성과)** 안전경영계획 목표 및 과제, 사회적 가치 확산활동에 대한 계획 이행·환류 등의 성과 수준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분야는 단위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분

- 평가유형, 분야별로 계층화한 후 전문가 집단이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는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을 이용

*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chy)화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상대 비교(Pairwise Comparison)하여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

2 22년도 평가체계 변화

❖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
❖ 현장 안전수준 평가 강화를 위한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확대**
❖ 평가 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공기관 평가 유형 세분화** 등

□ 세부 평가내용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사항**을 세부 평가내용 등에 반영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안법 제73조<'22.8.18 시행>)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산재 예방 지도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의 활동

- 도급 시 혼재작업 위험 예방(산안법 시행령 제53조의2<'21.11.19 시행>)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과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화재·폭발, 끼임, 추락,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조정활동

○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확인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 등을 **착안사항** 등에 반영하여 평가 진행

*「세부 평가내용」착안사항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반영(평가준비 정보제공)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A.1.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A.2.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A.4.1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B.2 위험성평가 지침·계획·활동 C.1~7 기계·기구 안전조치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및 절차에 따른 점검·개선
A.3.1 안전보건 예산 편성 A.3.2 안전보건 예산 집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A.1.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B.4 관리자·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A.2.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A.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B.7.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 등
B.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B.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B.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B.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등 마련

○ 보건분야 평가지표를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로 **통합·조정**

현행		개편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근로자 건강 유지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조치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	1.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활동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 3.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고객응대 근로자보호 및건강증진	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2.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확대

○ 공공기관 직영·도급 사업장 및 건설발주 현장에 대해 각 1개소씩 실시하던 현장작동성평가 **최대 각 2개소씩*** **실시**(기관당 최대 4개)

* ▲본사를 제외한 직영사업소가 5개 이상인 경우
▲건설발주·도급 현장에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또한, 그간 직영·도급 현장작동성 평가에서 **이미 확인된 지표**는 본사 평가 시 확인하지 않았으나, '22년부터는 본사도 확인*

* 직영·도급 사업장 현장작동성평가 2개소 기관은 기존과 같이 미확인

○ 한편, 본사만 있는 공공기관도 **사업장 장소적 관리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단위 지역 현장작동성평가 실시(공항·항만·위락시설 등)

□ 평가유형 세분화

○ 기간산업형과 서비스집중형으로 분류한 현행 평가 유형 중 **서비스집중형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룹I · II**」, 「**연구기관 등**」으로 세분화

* 그룹I(고위험 서비스집중형 기관), 그룹II(중저위험 서비스집중형 기관), 연구기관 등(기재부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인 기타 공공기관)

○ 그룹별로 평가지표 배점을 소폭 조정하여 평가 체계 합리화

□ 사고사망 산입범위 명확화 등

○ 기관별 사고사망 집계 시, 산입 여부를 두고 제기된 **공공기관의 이의** 등을 고려, 사고사망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개선**

현 행
▪ 해당연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사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된 해당연도 사고사망자(사망일 기준) * 단,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는 산입 함)

개 선
▪ 해당연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사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된 해당연도 사고사망자(사망일 기준) ▪ 다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사망자는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 발주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공공기관의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사망자 2)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사고사망자 3) 방화, 근로자 또는 타인 간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4) 사업장 외 교통사고(단,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는 산입하며, 사업장 외 도로에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졸음·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본다.) 5)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 기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등**의 현장 이행 수준을 **최고경영자 면담 평가**(Ⓐ-1.1) 결과에 반영 유지

평가 지표	연계 평가 지표(기간산업형 기준)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8.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

3 평가결과 산정

□ 점수 산정방법

○ 세부 평가내용의 달성정도를 5단계 평가 실시(사고사망 감소성과는 산식에 따라 산출)

- 유형·분야별 평가항목 득점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화

○ 평가지표 결측항목 발생시 환산

-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활동 분야는 해당되는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 적용받은 항목만으로 평가 후 이를 해당 분야에서 환산

• **예시)** $$\text{환산점수} = \frac{\text{배점의 합계}}{\text{결측제외 배점의 합계}} \times \text{득점의 합계}$$

분야	평가항목	배점	득점	환산점수
Ⓑ 안전보건관리 (8항목)	**합 계**	**100**	46.0	65.71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0	42.85
	2. 위험성평가	30	-	-
	3. 안전보건교육	40	16.0	22.86

□ 종합평가 및 현장작동성평가 결과 산출 비중

○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분야에 대하여 아래의 비율로 반영하되, 기관 종합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표별**로 종합평가 시 평가반 의견수렴을 통해 책임평가위원이 일부 **조정 가능**

< 종합평가와 현장작동성평가 산출 비중 >

구 분	기간산업형		서비스집중형		건설공사 발주	
	종합평가	현장작동성평가	종합평가	현장작동성평가	종합평가	현장작동성평가
B.안전보건관리*	50%	50%	70%	30%		
C.안전보건활동	-	100%	-	100%	20%	80%

※ 현장을 2개소 평가하는 경우 산술평균하여 현장작동성평가 비중으로 산입하되 현장작동성평가에서 평가되지 않은 지표 및 세부 평가내용은 종합평가 결과를 100% 반영

4 평가지표 총괄표

분 야	평가 지표	배점(점) ❶ 그룹 Ⅰ	배점(점) ❶ 그룹 Ⅱ	배점(점) ❶ 연구기관등	배점(점) ❷ 그룹 Ⅰ	배점(점) ❷ 그룹 Ⅱ	배점(점) ❷ 연구기관등	적용지표(개) 종합운영평가	적용지표(개) 현장적용성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	15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소 계	300	300	300	300	300	300	5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80	80	80	80	80	8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80	80	80	80	80	8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40	40	40	40	40	4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50	50	50	50	○	×
	5. 안전경영계획 수립	50	50	50	50	50	50	○	×
Ⓑ 안전보건 관리 (6항목)	소 계	250	250	250	250	250	250	6	4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	60	60	60	60	60	60	○	×
	2. 위험성평가	40	40	40	40	40	40	○	○
	3.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40	40	40	40	40	40	○	○
	4.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30	30	30	30	30	30	○	×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50	40	50	50	40	50	○	○
	6.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30	40	30	30	40	30	○	○
Ⓒ 안전보건 활동 (11항목)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11	11
	[Ⓒ-1 직영 및 도급(건설포함) 사업장]	80	80	80	200	200	200	4	4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5	20	15	40	50	40	○	○
	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20	20	60	50	50	○	○
	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25	20	25	60	50	60	○	○
	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5	20	20	40	50	50	○	○
	[Ⓒ-2 건설발주 사업장]	120	120	120	-	-	-	7	7
	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0	10	10	-	-	-	○	○
	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0	10	10	-	-	-	○	○
	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0	10	10	-	-	-	○	○
	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20	20	-	-	-	○	○
	2.5.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활동	10	10	10	-	-	-	○	○
	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40	40	40	-	-	-	○	○
	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20	20	20	-	-	-	○	○
Ⓓ 안전보건 성과 (3항목)	소 계	250			250			3	0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70	70	70	70	70	70	○	×
	2. 안전문화 정착·확산	100	100	100	100	100	100	○	×
	3.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	80	80	80	80	80	80	○	×

❶ 건설공사 발주사업장 평가를 받는 경우 ❷ 건설공사 발주사업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5 분야별 평가지표

Ⓐ 안전보건경영체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 규정, 안전경영계획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8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8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전관리 중점기관]
	4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과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의 내용과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경영계획 수립	1.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및 이행수준

Ⓑ 안전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6개 항목	6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	1.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 활동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활동 3.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40		B.2.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40		B.3. 안전보건교육・인식・활동참여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 2. 관리자・근로자(수급업체 포함)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아차사고 발굴 등) 제도 운영
	30		B.4.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1.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교육・훈련, 관련시설·장비관리 2.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등 절차의 관리
	그룹Ⅰ	50	B.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3.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그룹Ⅱ	40		
	연구기관등	50		
	그룹Ⅰ	30	B.6.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
	그룹Ⅱ	40		
	연구기관등	30		

Ⓒ 안전보건활동

사업장 관리상태 및 시정조치 활동 평가를 위한 직영 및 도급사업장과 건설발주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11개 항목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그룹Ⅰ	15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그룹Ⅱ	20 (50)		
	연구 기관등	15 (40)		
	그룹Ⅰ	25 (60)	C.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2.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
	그룹Ⅱ	20 (50)		
	연구 기관등	20 (50)		
	그룹Ⅰ	25 (60)	C.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일반화재 및 인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2.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그룹Ⅱ	20 (50)		
	연구 기관등	25 (60)		
	그룹Ⅰ	15 (40)	C.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작업중지요청제 운영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
	그룹Ⅱ	20 (50)		
	연구 기관등	20 (50)		

※ 괄호 안 배점은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1개 항목	【Ⓒ-2. 건설발주 사업장】		
	10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	1.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활동체계 2.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 발주자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활동
	10	C.2.2. 건설공사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4.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0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2.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3.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20	C.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0	C.2.5.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활동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 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40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1.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2.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3. 건설공사 작업지휘자 배치 및 활동 관리 4. 건설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20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관리 3.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4.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 안전보건성과[공통]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고사망 감소 성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7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100	D.2. 안전문화 정착·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 • 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이해관계자 안전문화 확산 사례
	80	D.3.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80
지표 정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추진 의지 및 실제 주요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평가 착안 사항	1. ❶기관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철학 ❷기관 안전보건수준 발전을 위한 현상파악 및 지원수준 ❸안전조직 등의 업무충실도 관리 ❹수급업체·발주현장·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활동 ❺안전경영을 위한 근로자참여 등 노사 소통 수준 ※ 대·내외 평가결과 및 사고사망 발생에 대한 근본대책(해당 시) 이해정도 포함 2. 안전보건경영방침의 ❶최고경영자 실천의지 반영, 조직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수준 ❷이해관계자와 공유 수준 3. ❶경영회의(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포함된 회의) 및 현장 안전경영 참여수준* ❷이해관계자와의 안전보건 현안사항 공유 및 현장 안전경영에서 도출된 중요사항의 이행 지원 수준 * 정부주재 안전관련 회의 참석, 자체 안전활동의 경영진 참여와 활동
준비 사항	○ 안전보건경영 방침 검토·게시·공유 증빙자료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련 회의, 현장 안전경영 및 지원수준 증빙자료 ○ 경영자 안전보건 관련 정기보고 및 공유 실시 증빙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기타 사항	○ 면담은 최고경영자*가 참여 원칙(평가기간 중 면담이 가능한 일정, 장소 제시) *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차 상위 경영자 면담 가능하나, 소명자료 제출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80
지표 정의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수준과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전관리 중점기관)
평가 착안 사항	1. ❶안전관리조직 구성·규모 적정성 검토 및 조치 수준 ❷직제 상 업무권한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과 실행수준(산하기관 포함) * 직영·도급, 건설발주, 하위조직을 총괄 관리·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반영 2. ❶적정 자격과 역량 등 전문성 보유수준 ❷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업무연속성 및 우수인력 확보 지원제도 ❸안전관리조직 및 산하조직의 전문성 향상 내실화* 수준 * 전문화 교육이수 현황 관리와 안전보건업무 수행능력 분석 등을 통한 발전방향 수립 및 이행 3. ❶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적정성, ❷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수단 운영 노력 수준 ❸의견청취 내용의 검토 및 반영수준 ※ 안전경영위원회·안전근로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운영기준 제정수준 포함 4. ❶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❷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수준 * 기존 도입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사이클에 따른 이행정도(법규검토, 내부심사 등)
준비 사항	○ 직제규정, 인사규정, 안전관리조직 구성에 관련 서류, 조직도 등 ○ 안전관계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계획 및 결과, 인사규정 등 ○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 · 계획 · 결과 관련 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 45001) 인증서 및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40
지표 정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을 통한 안전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평가 착안 사항	1. ❶안전 소요예산 합리적인 편성 활동(조사·분석 등) ❷재난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내역의 적정성* ❸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예산반영 수준** * 사고사망이나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예산 반영 상태(해당 시) **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사항 반영여부 2. ❶최고경영자 등의 안전보건 예산 집행·관리* 검토수준 ❷안전보건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필요시 검토활동(현장 안전경영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필요 등) * 추진과제별 담당자 지정, 사고사망 예방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여부 등
준비 사항	○ 안전보건 소요예산 조사·분석 증빙 자료(전년도 예산집행률 및 재해분석자료 포함) ○ 안전보건 예산 분기별 집행 계획 및 내역 ○ 안전보건 추진과제 예산 편성·집행 내역 증빙 자료(전년대비 비교표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50
지표 정의	안전보건활동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규정, 절차·지침의 내용과 구성 및 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관리 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평가 착안 사항	1. ❶「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3조 및「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규정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3의 내용, 소방·전기·교통 분야 등 안전관련 법 검토사항,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 단체 요구사항, 건설발주 현장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 제도 등 기관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내용의 반영과 구성 수준 ❷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준수, 현행법 내용을 반영한 최신화 수준, 제·개정 절차의 준수 수준 2. ❶기관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관의 위험·작업 특성을 반영한 지침(기준, 절차서, 수칙, 가이드, 매뉴얼 등)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❷안전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법 등) 등의 안전환경 변화·반영 등 최신화 수준
준비 사항	○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등 관련 서류 ○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필요한 관련서류 검토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A.5. 안전경영계획 수립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경영체제	-	50
지표 정의	기관의 자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포함한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과정과 세부 실행과제 이행의 적정성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경영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경영계획의 구성 및 이행수준
평가 착안 사항	1. ❶기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정성 ※ '사망자 제로 달성'등 최종적인 목표 이외에 조직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행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 ❷목표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활동(재해현황 분석, 전년도 과제 환류, 각종 회의 등) 2. ❶안전경영계획의 구성항목, 실행과제의 추진계획 및 절차, 담당부서, 달성기준, 소요예산 등 ❷안전경영계획의 수립절차, 이행력 향상방안, 이행점검 계획·실행 등 이행 수준
준비 사항	○ 안전경영책임계획, 안전관련 사업계획 등 ○ 목표설정, 전략·실행과제 발굴을 위한 활동 사항(회의, 현장 근로자 참여 회의·의견 청취, 조사·분석, 통계분석 등)의 증빙 자료 ○ 안전경영계획의 실행과제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장애극복 과정 및 이행결과 등 증빙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 득점 + 2득점) ※ N = 1 ~ 2의 해당점수 합계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보호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60
지표 정의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권 확보 사항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예방 활동 2.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활동 3.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평가 착안 사항	1. ❶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화학·물리·생물학적)의 조사·파악을 통한 관리 범주의 설정 수준 ❷관련법, 자체 계획에 따른 유해요인의 노출수준 측정과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포함)을 통한 주요 관리대상 작업·공정·업무 등의 분류 수준 ❸유해요인의 노출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실시, 관리 등의 실행 수준 ❹개선결과 모니터링과 차기계획 반영 수준 2. ❶근로자 건강(뇌심혈관계·근골격계·정신 질환·감정노동)에 영향을 주는 작업·업무 등에 대한 조사·파악과 관리 범주의 설정 수준 ❷관련법, 지침, 가이드 등에 따른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및 유해요인 조사·평가의 실행과 고위험군 분류 (작업·업무·부서·근로자 등) 수준 ❸작업관련성 질환 저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실시, 관리 등의 실행 수준 ❹개선결과의 모니터링과 차기계획 반영 수준 3. ❶건강위험 근로자 현황관리 및 위험군 분류의 설정 수준 ❷건강증진(사후관리, 건강개선)활동 추진 수준 ❸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근로자 참여유도 제고와 참여 수준 ❹개인별 건강개선 상태의 모니터링과 지속적 관리 수준 ※ 세부평가내용 1, 2는 작업환경과 조직적인 활동의 개선 노력 수준을 평가, 3은 개인의 건강개선을 위한 지원과 노력 수준(근로자 참여 포함)을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보건기준) 포함
준비 사항	○ 기관(본사, 직영사업소, 수급사업장 포함)이 자체 조사·파악한 유해요인 관련 자료, 최근 3년 건강진단 결과표*(사업장용), 일반건강진단 실시현황(EDI 자료/건강보험공단 제공), 사후관리**대상자 기록 및 사후관리 내역 서류, 최근 3년('20~22년)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관련법·지침·가이드 등을 통해 실시한 조사·평가*** 등의 결과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직무 스트레스 평가, 사무실 공기질 측정 등(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진완료 한 결과를 제출)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및 조치·개선 사항은 연계 평가 ○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은 사후관리 결과로 판단하지 않음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2. 위험성평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40
지표 정의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의 관리·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평가 착안 사항	1. ❶위험성평가 지침·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❷수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점검 근거(계약, 지침 등) 확보 등 적정성 2. ❶위험성평가 사전준비*, 실행, 개선대책 수립, 개선 수준 ❷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을 통한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상태 점검 및 결과조치의 적정성 ❸위험성평가 과정 중 해당 작업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의 참여 여부 * 사전준비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순회점검 결과, 유해·위험작업 종사자가 제시한 기존 의견 목록 등 3. ❶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수준 ❷안전보건활동 활용(관련 작업지침 반영, 안전작업허가, 안전점검 리스트 등) 수준
준비 사항	○ 위험성평가 지침 및 실행계획 관련 서류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규정 등) ○ 위험성평가(정기·수시) 활동자료 및 실시 결과 ○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실시 자료 ○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결과공유(교육, 전산망 게시 등), 위험성평가 활용 증빙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3.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40
지표 정의	안전보건지식 습득과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시행 수준과 성과 창출을 위한 구성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 2. 관리자·근로자(수급업체 포함)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아차사고 발굴 등) 제도 운영
평가 착안 사항	1. ❶「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❷업무·시기·상황에 부합하는 교육실시, 참석률 제고 등 교육관리의 적정성과 강사의 전문성 수준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자율적인 주제로 안전보건교육을 수립한 경우 인정 (심폐소생교육, 화재예방교육, 감염병예방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교육 등) 2. ❶관리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 수준(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해당공정 위험성인지 및 예방활동 참여, 해당공정의 주요 안전작업지침서 내용, 비상조치 계획 등) ❷근로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개인보호구 착용기준 및 착용방법, 비상시 조치사항, 최근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 3. 관리자 및 근로자(수급업체 등 포함),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아차사고(Near Miss)* 발굴제도와 안전보건 신고·제안의 지침(계획)수립 및 시행·채택·포상 수준 * 공공기관 직영, 수급업체, 건설현장 근로자 등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 등 포함 * 위험상황 신고, 위험성평가시 사전 설문, 별도 계획에 따른 아차사고 사례 수집 등의 다양한 활동 인정
준비 사항	○ 당해 연도 안전보건교육 계획, 각종 안전법령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파악, 교육실시 증빙자료 ○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 동의 관련 서류 ○ 신고·제안·포상제도 관련 지침 등 계획서 및 기록 유지관리·개선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주요공정·업무(위험·취약 등) 관리자 및 근로자 현장면담 실시 ※ 아차사고 :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발생가능한 잠재성이 있었던 사건 신고제도 : 시설·장소·작업 등에서 안전보건 상 위해요소를 관리주체에 알리는 조직적 활동 제안제도 : 재해예방 수단, 방법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활동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B.4.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관리	-	30
지표 정의	비상상황 및 재해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와 피해확산 방지,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교육·훈련, 관련시설·장비관리 2.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등 절차의 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❶사고시나리오·비상조치계획* 등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구성,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내용**과 최신화 관리 수준 ❷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실시 수준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적정성 ❸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지침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시나리오 · 계획 등 지침 마련시 지역사회 및 주민안전 등 고려 여부 포함 ** 교육·훈련 참여범위는 공공기관 직영, 수급업체, 건설 발주현장 근로자 등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이 실시하는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 포함 2. ❶재해 원인조사(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작성과 최신화 관리 수준 ❷사고, 재해 발생 시 경영자, 안전관리 부서로의 보고체계와 재해 조사보고서 작성 여부, 시기·방법, 조사팀 구성, 원인조사,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공유 등의 적정성 ❸재해*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및 활용** * 산하기관, 수급업체에서 발생한 재해 포함 ** 근로자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등의 활용, 환류활동 수준
준비 사항	○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매뉴얼, 사고시나리오·비상조치계획 등), 시설·장비 관리지침 ○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훈련 계획, 실행 및 후속조치 결과 ○ 재해 원인조사 지침(매뉴얼, 절차서 등) ○ 재해 원인조사 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현장 개선 및 구호조치 활동사례(해당 시)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참고 사항 ①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1-2012) ②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63-2017) ③「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8호 ④ 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5-2017)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B.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그룹 Ⅰ	그룹 Ⅱ	연구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	50	40	50
지표 정의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성 및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 2.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 3.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이행·환류
평가 착안 사항	1. 수급업체 현황 파악 및 관리,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협의체, 안전점검 등 위험예방 조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지침 수립의 적정성 2. ❶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등) 제시 등 입찰단계의 조치사항 ❷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 계약단계의 조치사항 ❸수급업체 안전수준 재평가 및 환류 활동의 이행 수준 3. ❶수급업체 작업(공정) 및 혼재작업 현황관리 ❷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❸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❹혼재작업 조정,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등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이행·환류 수준 4.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계획·실행, 도급 금지·승인, 하도급 금지의 적정성
준비 사항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침,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절차서 등) ○ 적격 수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서류 및 수급업체 현황 ○ 관계수급업체 작업관련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혼재 작업 조정 등과 관련된 서류 (법적 요구사항 이외에 추가로 산재예방을 위해 지원 사항 또는 실적 서류 포함) ○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도급금지 및 하도급금지 등에 관한 서류
기타 사항	○ 안전, 계약 및 도급사업 관리부서원의 면담실시 및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4.득점) ※ N = 1. ~ 4의 해당점수 합계

B.6.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그룹 Ⅰ	그룹 Ⅱ	연구기관 등
Ⓑ안전보건관리	-	30	40	30
지표 정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생시설 등 인프라 지원과 시설·장비 개선 및 보호구제공 등의 안전·보건조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평가 착안 사항	1.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채용시·특별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특별교육 실시 확인 및 환류활동 수준 * 교육자료 : 위험성평가 결과, 도급작업 위험성 검토결과, 취약시기별 안전대책 등의 내용 포함 2.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등의 설치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도급작업 관련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수준
준비 사항	○ 상주와 비상주 구분한 관계수급업체 현황(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작업내역, 연락처 포함) ○ 수급업체에 교육 및 위생시설 지원, 안전보건조치에 관련된 규정 ○ 안전보건정보 제공, 이행확인 및 시정조치 등에 관련된 서류 ○ 관계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관련 지원 실적 및 교육 이행확인실적 서류 ○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현황 및 의견수렴·건의 절차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지표는 평가 당해 연도에 종료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급에 대해 평가 ○ 현장 확인, 도급 및 수급 업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C-1 직영 및 도급 사업장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평가 시			건설발주 미평가 시		
		그룹Ⅰ	그룹Ⅱ	연구기관 등	그룹Ⅰ	그룹Ⅱ	연구기관 등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5	20	15	40	50	40
지표 정의	직영 및 도급 사업장, 사무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평가 착안 사항	1. ❶진・출입로와 이동통로(차량포함)에서의 충돌방지조치, 작업 및 이동공간의 정리정돈, 작업종류에 따른 적정 조도 확보 수준, ❷위기상황 시 출입문 및 비상구 기능 유지와 경보용 설비(또는 기구)의 작동 수준, 사다리·계단 등 가설통로 설치 적정성,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의 유지·관리 수준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적정성과 유해·위험성에 대한 주지 수준 3. 작업 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과 착용 방법에 대한 이해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9조
준비 사항	○ 건물 및 설비 배치도 ○ 화학물질 취급목록(물질안전보건자료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주요 통로,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현장 관리상태 및 근로자 면담을 통한 위험방지 조치 수준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평가 시			건설발주 미평가 시		
		그룹Ⅰ	그룹Ⅱ	연구기관 등	그룹Ⅰ	그룹Ⅱ	연구기관 등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25	20	20	60	50	50
지표 정의	직영 및 도급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2.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❶자체 보유 또는 반입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포함)의 파악·검토·점검 수준 ❷전기기계·기구·설비·배선 및 전기작업 등으로 인한 감전재해 등의 위험방지 조치 ❸관련법에 따른 적격품 사용 및 법정검사* 실시와 관리 수준 ❹정비·점검·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 차단조치(Lock-Out Tag-Out; 안전 잠금장치-안전꼬리표), 감시인 배치(필요시) 등 작업절차서를 준수한 작업수행 및 위험방지조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안전검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2. ❶건축물 등의 개구부 관리, 안전대 부착설비, 승강설비, 비계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현장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 조치 적정성 ❷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적재물, 구조물, 가설물 등)의 내·외력*에 의한 붕괴·도괴 등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진단·자체점검 및 조치의 적정성 * 기둥·보·외벽 등 주요 구조부 손상, 균열, 침하, 적재물 및 구축물의 무게중심 편향, 충돌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2장 및 6장, 제2편 1장 및 제3장
준비 사항	○ 기계·기구·설비(전기설비 포함)의 목록 및 매뉴얼, 배치도·검사·점검 기록 ○ 전기기계·기구·설비 측정장비의 목록과 검·교정 내역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적재물, 구조물, 가설물 등) 자체점검활동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주요 현장 및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 조치 상태 확인 및 면담을 통한 위험방지 조치 수준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평가 시			건설발주 미평가 시		
		그룹Ⅰ	그룹Ⅱ	연구기관 등	그룹Ⅰ	그룹Ⅱ	연구기관 등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25	20	25	60	50	60
지표 정의	일반화재,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 가연성물질 등에 의한 화재·폭발·중독·질식 위험예방조치 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일반화재, 인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2.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❶일반 · 유류 · 가스 · 전기 · 금속화재 등 화재의 종류에 따른 안전조치 및 소화대책의 적정성, ❷인화성 액체·가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화재·폭발·누출 예방조치 및 해당 장소에서의 화재 위험 작업시 관리 및 예방장비·시설* 등의 적정성 ❸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검토 및 방폭기계기구 선정·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해당시) * 화재감시자 배치 및 가스누출감지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염포, 소화설비 등 2. ❶화학물질에 의한 중독(급성·만성) 및 질식 위험공간(맨홀, 지하 물탱크, 정화조 등) 사용위치·장소·작업에 대한 조사와 현황관리 수준 ❷근로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위험성 주지(작업수칙, 명칭, 특별관리물질 고지 등)와 인지* 수준 ❸작업환경개선 설비(환기장치 등)와 세척시설, 출입금지 조치 등 비상상황 시 긴급 조치를 위한 시설·설비**·장소의 운용 수준 ❹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수준(수급업체 포함) * 작업절차, 취급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적정보호구의 착용 방법, 긴급대응 조치 등 ** 공기호흡기, 측정장비(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환기장치(배풍기), 응급구조장비, 안전대 등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3장, 제10장
준비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화학물질 취급장소 현황 ○ 화재예방점검 활동, 폭발위험장소 검토 서류 및 구분도, 취급설비 관리 기준 ○ 질식위험공간 파악 현황자료 및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예방장비 및 구조훈련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화학물질 보관장소 등 일부 현장 확인 및 면담을 통한 위험방지 조치 수준 평가 ○ 화재·폭발·누출 비상 시 대응을 위한 소방설비 등은 'B.4.1'과 연계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건설발주 평가 시			건설발주 미평가 시		
		그룹Ⅰ	그룹Ⅱ	연구기관 등	그룹Ⅰ	그룹Ⅱ	연구기관 등
ⓒ안전보건활동	ⓒ-1. 직영 및 도급사업장	15	20	20	40	50	50
지표 정의	위험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작업중지 요청제 등 안전관리 제도 운영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작업중지요청제 운영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❶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 위험작업(화기취급, 정전작업, 중량물 취급 등) 허가와 승인권자의 안전조치 승인여부, 현장입회 및 확인 여부 등 운영 수준 ❷ 작업중지 요청 건에 대한 조치·보고·기록·활용 등 운영 수준과 작업중지 요청제도 정착 및 활성화 수준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을 위한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 수준
준비 사항	○ 위험작업(정비·보수 작업, 반복작업 등) 작업표준 또는 절차서 ○ 안전작업허가제도, 작업중지 요청제 관련 매뉴얼·절차·지침·운영사례 ○ 검사·시험 등 외부 출장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자료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사례 및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한 운영 수준 평가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C-2 건설발주 사업장

20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서비스집중형]

C.2.1.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10
지표 정의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구축·운영 수준과 안전보건 역량강화 활동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 및 활동체계 2.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3. 발주자의 안전보건역량강화 활동
평가 착안 사항	1. 건설발주현장 대한 발주자가 수립한 ❶안전보건관리기준(지침·계획 등)의 유무와 역할 및 책임 등 구성 수준 ❷해당 현장에서의 적용 수준 (인터뷰 병행) ※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위주의 기준(지침·계획 등)을 평가 2.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실제 운용하고 있는 ❶건설발주 현황, 공사진척도 및 위험공종 현황 관리 체계와 ❷현장에서 발주자가 활용하는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설치·운영 수준 3. 건설발주현장의 공사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부서)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내·외부교육 계획 및 실적 등 기관의 지원 활동 수준
준비 사항	○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기준(지침, 계획 등) ○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 내용 ○ 공사관계자 및 안전관련 업무 담당자의 안전보건 관련 교육 계획 및 실적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2.2.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활동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10
지표 정의	건설공사 계획 수립 시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적정 공사금액 및 기간 산정, 중점 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설계조건 도출 수준과 발주자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및 검토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4.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평가 착안 사항	1.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과 안전보건확보 사항 및 적정성 검토 수준 2.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❶기관의 지원체계와 활동수준 ❷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의 근원적 원인 반영 수준 및 해당 공사와의 적합성 3.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 도출 수준*과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 참여 수준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실시 설계에 도면 등으로 표현가능토록 조건을 제시한 수준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❶ 기본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❷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이력 관리 등 관리 수준
준비 사항	○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및 반영사항, 적정성 검토결과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발굴 내용과 설계조건 제시사항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세부 평가사항 4.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됨 * 총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3.득점 +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C.2.3.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10
지표 정의	설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검토 및 설계반영 수준과 설계 단계에서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2. 설계자의 위험성 감소대책 설계반영 3.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설계자가 수행하는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발주자의 ❶지원 기준(계획 등), ❷위험성평가 지원·검토 활동사항 및 위험성평가 결과 2. 발주자의 설계조건과 설계자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설계(내역 및 도면) 반영 수준 및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수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❶설계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❷기본안전보건대장 공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이력 관리 등 관리수준
준비 사항	○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계획 등)과 활동사항 증빙 서류 ○ 위험성 감소대책과 설계조건 등이 반영된 실시설계 결과물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세부 평가사항 3.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2.4.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20
지표 정의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활동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검토 및 이행점검 수준과 시공 단계에서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검토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평가 착안 사항	1. 시공자가 수행하는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발주자의 ❶지원 기준(계획 등) ❷위험성평가 지원·검토 활동사항 및 위험성평가 결과 2. 시공자가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과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성 감소대책(안전보건조치)의 이행 계획 점검 수준(점검 계획, 점검 내용, 결과 처리 및 환류 등)및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수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수준 ❶공사안전보건대장 구성 내용 및 충실성 ❷설계안전보건대장 공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 조치, 재해예방전문기관 계약 체결 및 기술지도 조치, 작성자 및 확인자 수준 등 관리 수준
준비 사항	○ 시공자의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지원 기준(계획 등)과 활동사항 증빙 서류 ○ 시공자의 위험성 평가 결과서 및 발주자의 이행점검 결과물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세부 평가사항 3.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N = 1. ~ 3. 의 해당점수 합계

C.2.5.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10
지표 정의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체계와 활동 내용 및 조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업무수행 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안전보건조정자의 ❶선임 또는 지정시기, 안전보건 전문성, 도급업체 통보 및 공유 수준 ❷안전보건조정자 업무 기준·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지원 체계 2. 혼재된 위험작업 발생에 따른 아래의 안전보건조정자 조정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활동 내용과 결과 조치 등의 관리수준(인터뷰 병행) • 혼재된 위험작업 파악 활동에 관한 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위험성 파악에 관한 사항 • 혼재된 위험작업의 시기·내용에 관한 사항 •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준비 사항	○ 안전보건조정자의 안전보건 전문성, 배치 시기 및 공사 도급업체와의 공유와 관련한 서류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기준(계획 등)과 기관의 지원 체계 및 실적 관련 서류 ○ 안전보건조정자 회의, 점검, 환류 등 업무활동 관련 서류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본 평가 지표는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됨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C.2.6.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40
지표 정의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구현되는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와 고위험작업에서의 작업지휘자 배치 및 작업계획서 이행·관리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2. 건설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관리 3. 건설공사 작업지휘자 배치 및 활동 관리 4.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상시 안전보건모니터링 결과
평가 착안 사항	1.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순회를 통한 현장 안전보건조치 상태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 통로확보 등 기본안전조치 •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조치 • 기계·기구·설비·장비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 붕괴·도괴, 넘어짐, 충돌, 끼임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조치 • 전기에 의한 감전예방조치 •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조치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등 2. 시공자가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관리 수준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예시) >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 높이 2M이상 지반굴착작업 • 터널굴착작업 •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 등

	3.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운용 등 관리 수준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작업(예시)>**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2M이상 지반굴착작업 •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변경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 시 4. 공공기관의 건설발주현장에 대해 공단 등이 수시로 수행하는'패트롤(Patrol)현장점검' 결과를 반영(기관의 준비사항 없음) ※ 패트롤(Patrol)현장 점검 : 공공기관의 건설발주현장에 대하여 공단 등이 수준평가와 별개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점검으로 점검 종료 후 '사망사고 위험 시정지시서'가 발급됨
준비 사항	○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관련 서류는 현장 순회 시 확인 예정(면담 병행)
기타 사항	○ 평가와 관련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 중단하지 않도록 관리요망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C.2.7.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2. 건설발주 사업장	20
지표 정의	건설발주현장의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리, 현장의 위생·휴게시설 및 근로자 안전보건 확대조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관리 3.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관리 4.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대 조치
평가 착안 사항	1. ❶건설공사 종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의 적정성, 공사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및 금액 사전 주지,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조정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마련 및 적용 수준 ❷목적 외 사용 여부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과 계약체결 시 역량을 갖춘 지도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기술지도 관리 수준 3.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과 유지관리의 적정성 4.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조치 확대 조치 수준 및 작동성 ❶휴일작업 시 안전보건관리(일요휴무제 준수 포함), 미세먼지·폭염·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조치기준 및 활동 ❷2인1조 작업(단독작업금지) 관리, 작업중지요청제 및 위험신고제 운영과 활동
준비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 기술지도 계약관련 기준 및 서류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보건 보호조치 기준 및 활동 관련 사항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3.득점 + 4.득점) ※ N = 1. ~ 4. 의 해당점수 합계

Ⅳ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 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 성과	-	70
지표 정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성과측정과 측정 결과에 대한 경영자 검토 및 환류 수준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평가 착안 사항	1. 안전경영계획 등의 ❶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의 성과측정 계획 ❷계획의 이행수준과 목표의 달성 정도 및 문제점 도출·관리 수준 2. ❶전년도 수준평가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 및 조치, 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 조치에 대한 관리 수준, 자체 발굴한 안전보건상 문제점과 개선대책 ❷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경영자검토 환류 수준
준비 사항	○ 전년도 수준평가 결과 검토 현황 자료를 포함한 자체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계획서 ○ 성과측정 계획서에 대한 경영자 검토 확인 자료 ○ 성과측정 관련 시정조치 · 개선계획 수립 · 이행 관련 문서 등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D.2. 안전문화 정착·확산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 성과	-	100
지표 정의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확산 노력을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고사망예방 등과 연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 안전문화 확산 사례

평가 착안 사항

1. ❶기관의 안전문화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문제점과 취약·개선점 조사·분석 수준, ❷기관의 특성에 따른 조직 내부의 안전문화 정착 추진 활동* 수준 ❸조직 구성원의 참여 수준(본사, 직영사업소)과 지속 가능성

   * 4·4·4 안전점검의 날, 방송, 캠페인, 경진대회,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사용 등

   ※ 안전문화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가점(세부평가내용 내) 부여 (단순 실적 취합은 불인정)

2. [Best Practice]주요사업과 연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해관계자(지역사회·지역주민, 도급 등)의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사례 (1건)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연계성	○ 사고사망 감소 활동과의 연계성 ○ 기관 고유 사업과의 연계성
활동	○ 사회적 안전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 및 과제의 설정 ○ 문제해결, 개선발전 활동노력 ○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의 참여, 인력·예산의 지원 수준 ○ 노·사의 협력정도
성과	○ 안전가치 확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체계 마련 ○ 사고사망 예방 기대효과 및 성과
확산	○ 수급업체, 발주현장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안전활동 참여 유도 ○ 타 기관의 활용 가능성

	〈 자율적 활동사례(예시) 〉 **기관 고유기능** → **안전문화 확산사례** 작업장 안전설비 보조금 지급 → ▪ TOP10 고위험작업 One Point Lesson 시트 개발·보급 ▪ 근로자 안전의식수준향상 프로그램 보급·활용 사회기반시설(SOC) 운영·유지 → ▪ 사고예방을 위한 12대 골든 룰 개발·운영 ▪ 고위험작업 등급제 도입·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준비 사항	○ 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 및 참여·전개·지원 실적 증빙 ○ 4·4·4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및 실적, 기타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등 주요 추진사례 ○ **우수 사례 1건**(3page 이내로 작성)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제출 ○ 기타 본 지표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배점/N × (1.득점 + 2.득점) ※ N = 1. ~ 2. 의 해당점수 합계

D.3.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 성과	-	80
지표 정의	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영, 수급업체, 발주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사업주 포함)에 대한 사고사망 감소 성과를 평가	
적용 대상	☑ 종합평가	☐ 현장작동성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 기관의 직영사업소 · 수급업체 · 발주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사업주 포함)의 사망재해 감소성과

평가 착안 사항

1. 사고사망 감소성과를 사고사망자 증감인원수와 증감률을 조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산식 ①
<사망재해 감소 시 >

$$40+\left\{('21년ⓓ-'22년ⓓ)+\frac{'21년ⓓ-'22년ⓓ}{'21년ⓓ}\right\}\times 10$$

산식 ②
<사망재해 증가 시>

$$40+\left\{('21년ⓓ-'22년ⓓ)+\left(\frac{'22년ⓓ-'21년ⓓ}{'22년ⓓ}-1\right)\right\}\times 10$$

※ ⓓ : 사고사망자 수

❖ '22년도의 사망자 수가 없는 경우 최고점(80) 적용

❖ 사망재해가 감소하여 산식①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산출값은 최고 80으로 제한하고, 산출값에 0.95를 곱하여 점수 적용

❖ 전년도와 사망자수 동일 시 아래점수 적용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인원수	점수
1	27.50	5	21.83	9	21.06
2	24.17	6	21.55	10	20.95
3	22.92	7	21.34	11	20.87
4	22.25	8	21.18	12	20.80

	○ 사고사망자 수 : 해당연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사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된 해당연도 사고사망자(사망일 기준). 다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사망자는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사업장 또는 건설공사 발주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공공기관의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사망자 2)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사고사망자 3) 방화, 근로자 또는 타인 간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4) 사업장 외 교통사고(단,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는 산입하며, 사업장 외 도로에서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졸음·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본다.) 5)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 개정된 사고사망 제외 요건을 적용하여 '21년도 및 '22년도 사고사망자 수 집계 ○ 공공기관 간의 계약 등에 의해 도급(발주 포함)한 현장에서 사고사망(관계수급인 포함)이 발생한 경우, 도급(발주)과 수급에 해당하는 기관 모두에 사고사망자 수를 산입 ○ 직영·수급업체·발주현장 사고사망 관련하여, 은폐로 판명된 건이 확인되거나, 허위·누락·미제출·제출지연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점수 하향 조정(산재은폐가 고의적인 것으로 확인 시 최하점수 부여)
준비 사항	○ 최근 2년간 발생한 직영・수급업체・발주현장 근로자 사고사망 발생현황(양식 별도송부)
기타 사항	

평가 산식	○ 지표 점수 = 1.득점

memo

memo

memo